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부 산 고 등 법 원

울산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울산)2022누10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826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2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쪽 5줄과 11줄에 있는 "C"을 "O"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제1항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0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고, 다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지인,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수차례의 주식 양수도를 거쳐 2017년 말 K, L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J에 대하여는 3,500주 증여) 주주명부 등에 원고 명의로 65%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실질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소유관계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주주명의자가 실제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K, L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1991년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금납입대장,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원고는 명의신탁을 위한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면서 주식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E 명의의 1,000주, K 명의의 500주, M 명의의 1,000주가 2006년 말 원고의 아들인 J 명의로 변경되었고, K 명의의 1,000주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2008년 J 명의로 추가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각 주식명의 변경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러한 간주취득세 납부 경위에 관하여 원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회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성립될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최소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구 상법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소유 관계에 부합하도록 주식 명의를 정리할 법한데도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16년 이상 동안 여러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특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일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더라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지분율을 발행 주식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최대 주주는 원고가 아닌 65%의 지분을 보유한 O이었고, O은 원고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당시 O으로부터 O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받아두지 않았고, O에게 이 사건 회사가 발생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65%에 이르는 지분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⑤ K은 2006. 2.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계속 중임되어 현재도 대표이사 지위에 있고, L는 2006. 2. 10.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 취임한 이래 계속 중임되어 현재도 감사의 지위에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던 K과 L가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까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나서 2019. 6. 5. 공증인가 법무법인 P에서 K, L와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해지약정서를 인증하면서 그 약정일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7. 12. 31.'로 소급하여 적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작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